

주문장/도급계약서

계약 일반사항

계약번호	4500279003	계약일자	2024-03-06
구매자		공급자	
상호	SK주식회사	상호	(주)에스에프에이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43번길 9 (본점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로구 중로 26)	주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29길 25 에스에프에이
사장	윤종영	대표이사	김영민

※ "구매자"와 "공급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본 계약서 및 첨부 계약문서에 정하여진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전자서명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전자서명을 수행할 여력이 되지 않는 공급 업체는 구매 정보시스템에서 Acknowledgement을 수행 한다.

계약명	현대JV / 자동화물류 설비_OHT / 에스에프에이		
계약 기간	2024-03-07 ~ 2026-12-31		
계약금액			26,583,200 USD 공급가액 : 26,583,200 부가가치세 : 0
납품(검수) 방법	검수완료도	대금 지급 조건	외화T/즉시
지체 상금율	0.25 %	계약 이행 보증금율	3 %
하자 이행 보증 기간	최종검수완료일로부터 12 개월	하자 이행 보증금율	3 %
특약사항	<p>1. 대금지급 조건은 아래로 함. 선금금 30%는 발주처로부터 선금을 지급 받고, AP Bond 수령 후 60일 이내 현금 지급 기성 60%는 당사가 업체 검수를 완료하고, 발주처로부터 중도금을 지급 받은 후 15일 이내 지급 잔금 10%는 당사가 업체 검수를 완료하고, 발주처로부터 잔금을 지급 받은 후 15일 이내 지급 단 SKO와 당사간 지급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이를 준용하여 변경함.</p> <p>2. 납기조건은 아래로 함. SKO RFQ 기준에 따름. SKO 변경시 이를 준용함.</p> <p>3. 검수조건은 아래로 함. [산출물] SKO RFQ 명시 산출물에 추가하여 아래 산출물이 검수 산출물에 포함됨. 아래 산출물의 재사용 권한은 당사에 포함됨. (중도금 검수 조건부터 적용) 3-1. 도면 : Layout, Ass'y 도면(2D, 3D), Part Ass'y 도면, Part 도면, 전장도면, BOM List(가공품, 구매품) 3-2. Program : Controller & PLC Program, UI 일체(소스 포함) 3-3. 최종 Simulation 결과 : AGV 운영, Stacker Crane 운영, 구조해석 [Layout 기준일] SK와 업체간 계약 체결일</p> <p>4. 본 계약의 인지세 납부는 발주자와 수급자가 각각 50%씩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수급자가 인지세 전액을 선납한 후 SK주식회사는 인지세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급자에게 정산함.</p>		

※ 첨부문서:
표준비하도급계약서(기계업종).pdf
도급업무내역서_설비업종_북미JV_OHT_SFA_240305.docx
SK주식회사_표준견적서_(SKBA3_조립-OHT)_SFA_(240226-한국)_제출_최종.pdf

번호	품명	내역	수량	단가	금액	통화
	납기일	납품 주소				수령인
10	물류설비	SKBA3 자동화물류(OHT)	1	26,583,200	26,583,200	USD
	2026/12/31	5059 Hwy 411, Kingston, GA, USA S-JV Battery Cell Georgia Project 현대 북미 JV				박종근
금액합계						26,583,200
부가세						0
합계총액						26,583,200

* 본 계약은 "구매자"와 "공급자"의 전자서명을 완료함으로써 구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고 당사자의 권리의무가 발생한다.

* 당사자는 위 내용과 첨부 계약조건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가진다.



목 차

- 1.표준하도급계약서(기계업종)
- 2.협력회사 보안준수 약정서
- 3.협력회사 보안요구사항
- 4.비즈니스 파트너 윤리실천 서약서
- 5.비밀유지계약서
- 6.협력회사 부정당행위 제재 확인서
- 7.SHE 이행서약서
- 8.업무재위탁 약정서
- 9.협력회사 ESG 행동규범

1. 표준하도급계약서(기계업종)

SK주식회사(이하 "원사업자"라 한다)와 수급사업자(이하 "수급사업자"라 한다)는 기계,설비 또는 물품(이하 "목적물"이라 한다)의 제조, 가공, 수리 등 (이하 "제조 등"이라 한다)을 위한 하도급거래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기본원칙)

-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이익을 존중하여 이 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한다.
- ②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및 기타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

제2조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

- ① 이 기본계약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하는 경우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것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 기본계약과 별도로 체결하는 개개의 거래계약(이하 "개별계약"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적용되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을 준수한다.
- ② 개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면에 목적물의 발주년월일, 품명, 사양, 수량 및 단가, 납기 및 납품장소, 검사의 방법 및 시기, 대금(이하 "하도급대금"이라 한다) 및 그 지급방법과 지급기일을 기재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다만, 개별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사전에 부속협정서 등으로 정해 놓은 경우에는 그 내용으로 위의 기재사항을 갈음할 수 있다.
- ③ 납품이 빈번하여 개별계약을 체결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제2항의 거래내용이 기재된 발주서(전산발주서를 포함한다)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고, 수급사업자가 발주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안에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개별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개별계약은 수급사업자가 발주서를 수령한 날에 해당 발주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성립한 것으로 본다.
- ④ 이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변경되는 내용을 서면에 기재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 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목적물 제조에 대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개별계약서 또는 발주서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한다.

제3조 (개별계약 등의 추정)

-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개별계약서나 발주서 등(이하 '발주서 등'이라 한다)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위탁사실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서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에 해당 서면을 원사업자에게 송부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1.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제조 등의 내용
2. 하도급대금
3. 위탁일
4.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명과 주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 주소와 사업장 주소를 포함한다)
5. 그 밖에 원사업자가 위탁한 내용

- ②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위탁사실에 대한 확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회신한다.

- ③ 위탁사실에 대한 확인 요청과 이에 대한 회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주소(전자우편주소 또는 공인전자주소를 포함한다)로 한다.

1. 내용증명우편
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것

가.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을 것

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할 것

3.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 ④ 원사업자의 사업장책임자나 작업반장 등이 발주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제조 등을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책임자나 작업반장 등에게도 위탁사실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장책임자나 작업반장 등이 한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는 원사업자가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특약설정)

-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기본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대등한 지위에서 상

호 합의하여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계약변경)

- ①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호 합의하여 이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의 내용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변경할 수 있다.
 1.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변경이 필요하고, 이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모두 인정하는 경우
 2.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 추가하려는 경우
- ② 계약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원사업자의 요구로 사양변경, 작업기간, 작업물량 등 위탁내용이 함께 변경되어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협의하여 위탁내용의 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다만, 원사업자는 위탁내용 등이 변경되기 전에 수급사업자가 이미 수행한 부분은 정산하여 지급한다.
- ③ 계약내용을 변경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발생에 책임이 있는 자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며, 원사업자나 수급사업자 모두에게 귀책사유가 없거나 귀책사유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하여 손해의 분담액을 정한다.

제6조 (발주 및 목적물의 제작)

- ① 원사업자는 제조 등을 위탁하려는 때에는 수급사업자의 납품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시일을 두고 발주한다. 이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장기적인 발주계획을 예고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필요한 정보를 함께 제공한다.
- ② 수급사업자는 이 기본계약, 개별계약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내용 등에 따라 목적물을 제작한다.

제7조 (대여서류)

- 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대여 받은 도면, 시방서, 규격 등(이하 "대여서류"라 한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하며, 개별계약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 ② 수급사업자는 대여서류의 사용을 완료하거나 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반환한다.
- ③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서면에 의한 사전 승낙 없이 대여서류를 복사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대여서류 또는 원사업자가 승낙한 복사, 변경서류에 대한 어떠한 처분행위(제3자에 대한 열람, 대여를 포함한다)도 하지 아니한다.
- ④ 수급사업자가 대여서류를 멸실, 훼손하거나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다.

제8조 (지급품)

- ① 원사업자는 품질의 유지, 개선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수급사업자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 부품, 반제품 또는 제품 등 (이하 "지급품"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 ② 지급품은 원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인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급품의 인도 장소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고, 지급품의 유, 무상 구분, 품명, 수량, 제공일, 대가 및 그 지급방법, 지급기일, 불량지급품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서면으로 정한다.
- ③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정한 공급업자로부터 지급품을 직접 수령한 경우에는 즉시 수령증을 원사업자에게 송부한다.
- ④ 수급사업자는 지급품을 수령하는 경우 신속하게 이를 검사하여 품질, 수량 등을 확인하고 지급품의 하자 또는 수량의 과부족 등의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원사업자에게 통지하여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원사업자가 정한 공급업자로부터 직접 수령한 경우에도 그러하다.
- ⑤ 수급사업자가 제4항의 검사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지급품의 하자 및 수량부족에 대한 책임은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지급품의 성질상 수령 즉시 하자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수령 후 6개월 이내에 지급품의 하자가 발견되면 원사업자가 하자에 기인하는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지며, 6개월 내에 하자가 발견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6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 ⑥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지급품의 이상에 대한 통지를 받으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대체품 또는 부족분을 추가 지급한다.
- ⑦ 수급사업자는 작업도중 지급품에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원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 후 상호 협의하여 이를 처리한다.
- ⑧ 수급사업자가 지급품의 이상에 대한 조치를 태만히 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는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
- ⑨ 무상지급품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가공불량이 위탁 시 합의한 허용치를 초과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는 그 초과분에 상당하는 가공비 및 해당 지급품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사업자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불량율의 허용치, 지급금액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품목별, 재료별로 구분하여 정한다.
- ⑩ 원사업자는 유상 지급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 전에 유상 지급품의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는 행위
 2. 자기가 구입·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유상 지급품의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를 지급하게 하는 행위

제9조 (지급품의 소유권)

지급품의 소유권은 원사업자가 보유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유상으로 지급한 지급품은 수급사업자가 그 대금을 완제한 때부터 수급사업자의 소유로 한다.

제10조 (대여품)

- ① 원사업자는 목적물의 품질 유지, 개선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수급사업자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조에 사용되는 치공구, 측정구, 금형 등(이하 "대여품"이라 한다)을 대여할 수 있다.
- ② 대여품의 품명, 수량,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를 하는 때의 방법,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1조 (지급품 등)

- 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 소유의 지급품 또는 대여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하며, 원사업자의 서면에 의한 사전 승낙 없이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급 또는 대여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
 2. 제3자에게 매각, 대여, 담보권 설정
 3. 그 밖에 원사업자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처분행위
- ②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 소유의 지급품 또는 대여품을 수급사업자의 자산과 명확하게 구별될 수 있도록 적절한 명인방법(明認方法)을 갖추어 공시(公示)하여야 하며, 물품관리 장부상에도 원사업자의 소유임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기재한다.
- ③ 무상지급품의 잔재, 단재 또는 절분의 처리에 대해서는 원사업자의 처분에 따른다.
- ④ 수급사업자는 강제집행, 파산신청 또는 노동쟁의 등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원사업자 소유의 지급품 또는 대여품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원사업자에게 통지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이들 물품을 반환하거나 제3의 장소에 이전하는 등 원사업자의 소유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⑤ 수급사업자는 대금을 완제한 지급품 또는 대여품의 경우에도 제4항과 같은 사태가 발생할 경우 목적물의 납품에 영향이 없도록 즉시 원사업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⑥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 소유의 지급품 또는 대여품의 지급, 대여기간이 종료하거나 계약이 해제, 해지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원사업자에게 반환한다.
- ⑦ 원사업자는 필요한 경우 수급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수급사업자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원사업자 소유의 지급품 또는 대여품의 사용 및 보관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원사업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수급사업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⑧ 원사업자는 조사결과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사업자는 자신의 책임과 부담으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⑨ 원사업자 소유의 지급품 또는 대여품이 수급사업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훼손된 경우 수급사업자는 즉시 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완전한 대체품을 제공하거나 그 손해를 지체 없이 배상한다.
- ⑩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목적물을 제조하기 위하여 원사업자로부터 기술, 자금 등의 지원을 받아 자기가 제작한 금형을 임의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 ⑪ 수급사업자는 지급품 또는 대여품의 정밀도 유지를 위해 적절한 기준기를 이용하여 정기점검 및 교정보수를 하며,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에게 이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제12조 (무상자재의 불량 등)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무상지급 한 자재 등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불량을 발생시켰거나 원사업자의 지급품으로 인하여 발주물품에 불량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히 원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불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부담한다.

제13조 (금형)

- ① 원사업자는 제조 등에 필요한 금형을 수급사업자가 제작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금형비의 계산, 상각방법 등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 ② 상호 협의하여 정한 방법에 따라 상각이 완료된 금형의 소유권은 원사업자에게 귀속한다. 다만, 상각완료전이라도 원사업자가 미상각된 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지불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의 소유로 한다.
- ③ 상각이 완료된 금형 중 금형제작비의 전액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한 금형의 소유권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14조(견본제작)

- ① 원사업자는 이 기본계약 체결 이후 수급사업자가 목적물의 제조·수리·가공에 착수하기 이전까지 사이에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견본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견본을 즉시 검사하여 그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 ③ 제2항의 견본 검사의 기준과 절차에 관하여는 제22조(검사 등)을 준용한다.
- ④ 견본 제작비용의 부담, 견본이 불합격한 경우의 처리 방안 등에 대해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

업자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제15조 (시험검사 및 중간검사)

-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호 협의하여 목적물이 발주사양을 만족시키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시험검사를 한다.
- ② 시험검사방법에 대하여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하여 합리적인 방법을 정한다.
- ③ 수급사업자는 필요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 또는 제조공정상의 검사에서 목적물의 불량을 발견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원사업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 ④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특별한 검사공정의 시험검사에 원사업자가 지정한 검사원을 참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 ⑤ 시험검사에 수반되는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급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따른 시험검사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한다.
- ⑥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제조 등을 위탁한 범위에 한정하여 공정, 품질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중간검사를 할 수 있으며 수급사업자는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이에 적극 협조한다.

제16조(주문 이외 목적물의 제조, 판매, 수출, 사용의 금지)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주문 또는 서면에 의한 허락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원사업자의 사양에 따른 목적물의 제조·판매·수출, 불합격품 및 유사품의 판매·수출 및 사용 등을 스스로 하거나 제3자에게 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안전경영)

-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작업 수행으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한다.
- ②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근로자가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 점검
 3. 수급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 제공 등 지원
 4. 수급사업자가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6. 위생시설 등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원사업자가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 ③ 원사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사업자의 근로자, 수급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수급사업자의 근로자가 원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8조(단가 및 하도급대금의 결정)

- ① 단가는 목적물의 내용, 물량, 지식재산권 소유, 인건비, 관리비, 물가 및 수급사업자의 적정 수익 등을 고려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 ② 단가결정의 기초가 된 조건이 계약기간 중 경제상황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변경된 때에는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상대방에게 단가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신제품(초도품) 제작 등과 같이 발주 전에 확정단가를 정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 임시단가를 적용한다. 이 경우 임시단가와 확정단가의 차액은 확정단가를 정하는 때에 소급하여 정산한다.

제19조 (선급금)

-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초기에 비용소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선급금의 사용분야, 선급금 정산 등에 대하여는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 ②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제조 등을 위탁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위탁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원사업자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 ③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한다.
- ④ 원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선급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어음할인료·수수료를 지급한다. 이 경우 어음할인료율·수수료율은 하도급대금에 적용되는 어음할인료율·수수료율을 따른다.
- ⑤ 선급금은 계약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며, 원사업자가 선급금 사용계획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요구하는 선급금 사용계획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14일 안에 제공한다.
- ⑥ 수급사업자는 선급금 사용 완료 후 그 사용내역서를 원사업자에게 제출하고, 선급금을 계약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 선급금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 다음 가산하여 반환한다. 이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급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 시까지로 한다.

- ⑦ 원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선급금을 선급금 통장 공동관리 약정 등 수급사업자의 선급금 인출 또는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⑧ 선급금은 기성부분의 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정산한다.
· 선급금 정산액 = 선급금액 × (기성부분의 대가 상당액 ÷ 총 하도급 계약금액)
- ⑨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선급금에 대한 적절한 보증을 하지 않을 경우 선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 (검사 등)

-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목적물을 검사할 수 있다.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 타당한 방법으로 정한다.
- ② 원사업자는 납품된 목적물이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한다. 이 경우 서면이 교부된 시점에 목적물이 인도된 것으로 본다. 다만, 수령하는 때에 검사를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한 경우에는 수령시점에 인도된 것으로 본다.
- ③ 검사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하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요구에 따라 제3자에게 검사를 의뢰한 경우에도 그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 ④ 원사업자는 검사기간 중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한다.
- ⑤ 원사업자는 검사 결과 목적물의 수정이나 보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재납품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한다. 이때 재납품에 소요되는 비용은 귀책사유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21조 (불합격품 등의 처리)

- 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검사결과 목적물의 수량이 부족한 것으로 판정되거나 목적물이 불합격된 경우에는 원사업자의 요구에 따라 신속하게 그 부족분 또는 대체품을 납품한다. 이 경우에도 수급사업자는 납품지연에 따른 책임을 진다.
- ② 수급사업자는 검사결과 불합격품 또는 과납품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회수한다. 다만, 불합격사유가 경미한 경우에는 원사업자는 불합격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수할 수 있으며 이 때 목적물의 대금은 최초 약정대금에서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③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가 정하는 회수 기간 내에 불합격품 또는 과납품을 회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사업자는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반송하거나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폐기할 수 있다.
- ④ 원사업자가 정하는 회수 기간이 지나서까지 수급사업자가 불합격품 또는 과납품을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보관하는 불합격품 또는 과납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훼손 또는 변질되었어도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그 손해를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하는 회수 기간 내에 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불합격품이 원사업자가 지급한 사급자재의 하자에 따라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은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제22조 (재검사)

- ① 수급사업자는 불합격된 목적물에 대하여 그 불합격 사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검사 방법 및 절차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 ② 재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검사의 귀책사유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23조 (납기)

- ① 수급사업자는 납기까지 완성한 목적물을 개별계약으로 정한 장소에 납품한다.
- ②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사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납기를 변경할 수 있다.
- ③ 수급사업자는 목적물을 납기까지 납품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원인 및 납품 예정일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 ④ 수급사업자가 납기에 납품하지 못한 때에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납기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배상청구의 범위는 별도로 정한 품질보증 및 납기보증계약서에 따른다.
- ⑤ 원사업자는 개별계약에 명시된 납품기준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수급사업자의 목적물의 납품에 대한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연하여서는 아니 되며, 수령의 거부 또는 지연으로 인하여 수급사업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를 배상한다.

제24조 (납품)

- ① 수급사업자는 **목적물** 수급사업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개별계약 등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납품 장소에 납품한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목적물을 납품한 때에는 목적물에 대한 검사 전이라도 즉시(제49조에 따라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검사완료 즉시) 수령증명서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한다.
- ② 수급사업자는 목적물을 납품하는 때에 원사업자가 제공한 도면, 사양서, 취급설명서, 예비품 등을 반환할 수 있다.
- ③ 수급사업자는 별도의 약정이 있거나 원사업자가 승낙한 경우 이외에는 목적물을 분할하여 납품할 수 없다.
- ④ 수급사업자가 임의로 분할 납품한 경우에는 원사업자는 자신의 선택으로 분할 납품분을 납품

처리하거나 일시 보관책임만을 지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제25조 (포장규격 준수)

수급사업자는 목적물을 납품하는 때 원사업자가 정한 포장시방, 포장수량 기타 포장규격을 준수한다.

제26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 ① 원사업자는 이 기본계약 또는 발주서 등에서 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까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한다.
- ②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은 목적물의 수령일(월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부터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 ③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령하는 때에는 원사업자에게 미리 등록한 인장이 날인된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사업자가 등록한 인장 또는 등록한 인장이 날인된 영수증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원사업자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인장 또는 영수증의 분실, 도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은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
- ④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완료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이나 준공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 등을 완료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기성금이나 준공금 등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 ⑤ 원사업자는 해당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발주자로부터 교부 받은 어음보다 지급기간이 짧거나 같은 어음을 교부한다.
- ⑥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어음으로 지급하고,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만 지급한다.
- ⑦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 등의 명세 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 결제일을 말한다)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만 지급한다.

- ⑧ 제6항의 할인료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할인율에 따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할인율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할인율을 적용한다.
 - ⑨ 제7항에서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원사업자가 금융기관(「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를 포함한다)과 체결한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약정 수수료율로 한다.
- 원사업자가 제2항 또는 제4항의 기간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한다.

제27조 (상계)

- ① 원사업자는 유상 지급품의 대금, 제29조 제4항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채권, 그 밖에 수급사업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확정된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급사업자에 대한 납품대금의 지급채무와 대등액으로 상계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상계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상계액에 대한 수령증을 교환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그 명세를 수급사업자에게 사전에 서면통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8조 (지체상금 등)

- ① 수급사업자가 납기 내에 납품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원사업자는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다. 지체상금은 지체일수에 하도급대금의 1000분의 1.5를 곱한 금액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 이후 설계와 제조가 일괄하여 이루어지고 그 설계에 대하여 발주한 목적물의 제조에 대해서는 지체일수에 하도급대금의 1000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②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가 끝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한다. 다만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제조 등의 위탁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 ③ 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1.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 2. 원사업자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제조가 중단된 경우
 - 3. 수급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이행을 할 경우(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터 원사업자가 보증이행을 지시한 날까지를 의미한다)
 - 4. 수급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 할 경우(원사업자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를 의미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한한다)

5. 그 밖에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지체일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납기 내에 납품을 완료한 경우에는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납기 이후의 검사 시 목적물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내용과 다르거나 하자 등이 있어 그에 대한 수정요구를 한 경우에는 수정요구를 한 날로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납기를 경과하여 납품을 완료한 경우에는 납기 익일부터 검사(수정요구를 한 경우에는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⑤ 원사업자가 이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으로 정한 선급금이나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그 지급을 요청할 수 있고, 지급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수급사업자는 위탁받은 제조 등의 작업에 대한 중지기간을 정하여 원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제조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⑤ 제5항에 따라 목적물의 제조 등의 중지기간은 지체상금 산정 시 지체일수에서 제외한다.

제29조 (계약해제, 해지)

①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2.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의 취소,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어음, 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 파산, 화의개시 또는 회사정리절차의 신청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다른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함으로써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5.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재해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이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②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 또는 계약의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시정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이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2.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물의 제조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수급사업자의 위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수급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물의 제조를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납기 내에 납품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수급사업자의 인원, 제조 장비 및 품질관리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현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 ③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 이로 인하여 발생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는 각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한 채무를 지체 없이 변제한다.
- ⑤ 수급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라도 원사업자가 아직 납품되지 않은 목적물(작업 중인 것도 포함한다)에 대하여 납품요청을 하면 지체 없이 목적물을 납품한다.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 ⑥ 원사업자는 제5항에 따라 납기 전의 목적물을 직접 완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 소유의 재료, 기기, 도면, 치공구 등을 수급사업자로부터 제3자에 우선하여 양수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 ⑦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계약해제·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상대방에게 통지한다.

제30조 (거래정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외의 부득이한 사유로 거래를 정지하려는 경우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대방에게 피해가 없도록 3개월 이상의 거래정지 유예기간을 두어 이를 사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한다.

제31조 (제조물책임)

- 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발주한 목적물에 결함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②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목적물에 대하여 원사업자에게 제조물책임 청구 또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또는 소송을 방어하며, 이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부담한다.
- ③ 원사업자는 자기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인하여 제2항에 의한 청구 또는 소송에 따른 관련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 ④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제2항에 의한 청구 또는 소송의 발생 방지, 방어 및 대책수립에 상호 적극 협조한다.

제32조 (비밀유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도면, 필름,

자료, 금형 기타 모든 노하우)을 본 계약기간 중이나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제33조 (지식재산권 등)

- 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목적물과 관련하여 원사업자와 공동으로 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및 기술, 노하우(이하 "지식재산권 등"이라 한다)를 출원하려면 그 취지를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원사업자의 서면승낙을 얻은 후에 출원한다. 이 경우 공동 연구하여 개발한 지식재산권의 귀속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공유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출원된 지식재산권의 귀속, 사용 등에 대하여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위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이를 즉시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협의하여 처리한다. 비용분담 기타 분쟁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 ③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목적물과 관련하여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처리하고,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 중 책임이 있는 자가 상대방의 손해에 대해 배상한다.
- ④ 이 계약의 목적물 및 이행과정에서 취득하는 기술지식의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은 원사업자에게 귀속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은 지식재산권을 사용 범위 이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또한 원사업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해당 지식재산권을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⑤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지식재산권과 영업비밀을 침해할 수 있는 부품의 제작·판매 등을 하지 아니하며, 제3자에게 시키지도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에게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
 2. 이미 상호 합의하여 원사업자의 동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지식재산권 침해 없이 개발한 경우
- ⑥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기간 도중은 물론 계약의 만료 및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후에도 원사업자의 도면, 사양서, 지도내용 외에 자신의 기술을 추가하여 시공한 목적물 및 그 제조방법 등(이하 "개량기술"이라 한다)에 관하여 사전에 원사업자에 문서로서 통지한 후 지식재산권 등을 획득할 수 있다. 다만, 원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원천기술의 기여분과 수급사업자의 개량기술의 가치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조건으로 원사업자에게 통상실시권을 허

여한다.

제34조 (하자책임)

- ① 수급사업자는 제36조에 따라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후 6개월 이내에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인정되는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는 그의 책임과 부담으로 지체 없이 목적물을 수리하여 주거나 완전한 목적물과 교환해 준다. 다만,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목적물의 특성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에 하자책임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 하자의 책임여부에 대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제3자의 판정이나 그 밖에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되, 다른 법률(「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는 제외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5조 (품질보증)

- ① 수급사업자는 목적물의 제조공정부터 납품시점까지 원사업자가 요구하는 사양, 품질 및 신뢰성 만족여부를 자체적으로 확인, 보증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수급사업자는 사양, 품질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계획의 수립, 측정체계의 유지, 운영, 통계적 공정관리, 검사, 시험 결과의 보관, 품질개선대책의 수립, 현장 피드백 등 품질보증에 필요한 활동을 한다.
- ③ 수급사업자가 목적물의 품질을 보증하지 못하여 원사업자의 품질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원사업자는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한다.
- ④ 수급사업자는 목적물의 품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공정 및 공법의 변경, 하도급사업자의 변경, 금형수정, 자재변경, 부품 국산화 등의 경우 원사업자에게 사전 서면동의를 받고 진행한다.
- ⑤ 수급사업자가 공급하는 목적물은 사용금지 자재, 독극물 등 유해 자재에 관한 법규 및 안전규제사항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수급사업자는 제품생산 및 설계 등과 관련한 최신 법규 및 규격기준과 기술정보를 입수하여 수시로 목적물의 안전기준(설계기준, 안정성 기준)을 재검토하고 이에 관련한 사항을 즉시 원사업자에게 통지한다.
- ⑥ 품질보증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책임과 의무는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상호 합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6조 (목적물의 소유권)

목적물은 검사에 합격한 시점부터 원사업자의 소유로 한다. 다만, 검사를 위해 일부 목적물만 납품된 경우 나머지 목적물의 소유권은 원사업자에게 인도된 시점에 이전된다.

제37조 (자료제출 등)

- ① 원사업자는 제조위탁을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급사업자에게 생산관리, 품질보증 등에 관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때에는 즉시 이에 협조한다. 다만 수급사업자가 즉시 협조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원사업자는 목적물의 제조 또는 품질관리에 한정하여 필요한 경우 수급사업자의 동의를 받고 수급사업자의 사업장, 공장, 생산 및 품질 관리 실태 등을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 ④ 수급사업자는 사업장 및 공장 등에 화재, 유해물질 유출, 정전, 설비파손 등 환경안전 사고가 발생하거나 기타 환경안전과 관련하여 중요한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즉시 원사업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다.

제38조 (잔존의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해지된 후에도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부담한다.

1. 제31조에 정하는 제조물책임에 관한 사항
2. 제32조에 정하는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3. 제33조에서 정하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
4. 제34조에 정하는 하자책임에 관한 사항

제39조 (기술지도)

원사업자는 목적물의 제조에 필요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사업자의 기술자를 수급사업자의 사업장에 파견하여 기술을 지도하거나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를 원사업자의 사업장에서 필요한 훈련을 하게 할 수 있다. 기술지도에 따른 비용은 양당사자가 협의하여 부담한다.

제40조 (내국신용장)

- ① 원사업자는 수출용 목적물의 제조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의 제조에 차질이 없도록 발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을 교부한다.

- ② 신용장에 의한 수출 시 원사업자가 원신용장을 받기 전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원신용장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을 교부한다.

제41조 (관세 등 환급)

- ① 원사업자는 수출용 목적물의 제조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관세 등을 환급받은 후 환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받은 내용에 따른 환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 ② 원사업자는 관세 등을 환급받기 이전에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도래할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으면 수급사업자에게 관세 등 환급상당액을 지급한다.
- ③ 원사업자가 관세 등 환급상당액을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한다.
- ④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납품대금에 포함해 관세 등을 미리지급하면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국가로부터 관세 등 금액의 환급이 가능하도록 관세 환급에 관련된 제반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제42조(사업장 출입)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이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에 따라 상대방의 사업장에 출입하는 때에는 미리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 안전, 질서의 유지에 협조한다.

제43조 (재하도급)

- 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발주한 목적물의 일부에 대한 제조 등을 제3자(이하 “재수급사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원사업자에게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 1. 재하도급계약서(해당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
 - 2. 재하도급대상 과업 범위 및 과업 물량
 - 3. 재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방법
- ② 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수급사업자가 과업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재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 1. 수급사업자가 지급정지 및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재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어 재수급사업자의 직접 지급요청을 받은 경우
 - 2.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및 재수급사업자 간의 합의를 통하여 재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한 경우

3. 수급사업자가 재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재수급사업자의 직접 지급요청을 받은 경우
- ③ 제2항에 따라 원사업자가 재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 해당 직접 지급액에 해당하는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지급채무는 소멸하며, 재수급사업자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지급채무 또한 소멸한다.
- ④ 원사업자가 재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공제한다.
- ⑤ 수급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의 경우에도 이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이행의무를 면하지 아니한다.
- ⑥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제3자와의 재하도급거래에 개입하여 자신이 위탁한 부품의 품질 유지 및 납기 준수 등 하도급거래의 목적과 관계없는 '제3자의 선정, 계약조건 설정 등' 재하도급거래내용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44조 (권리, 의무의 양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사전 승낙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에서 정한 제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담보제공 기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45조 (손해배상)

- ①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이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을 위반한 경우
 2.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제33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 해지한 경우
 3.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경우
- ② 수급사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목적물의 하자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한다.

제46조 (분쟁해결)

-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의 해석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을 적용하며, 상기 법상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서면상의 자료에 따르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일반 상 관례에 따른다.
- ②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있는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 다만 양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달리 정할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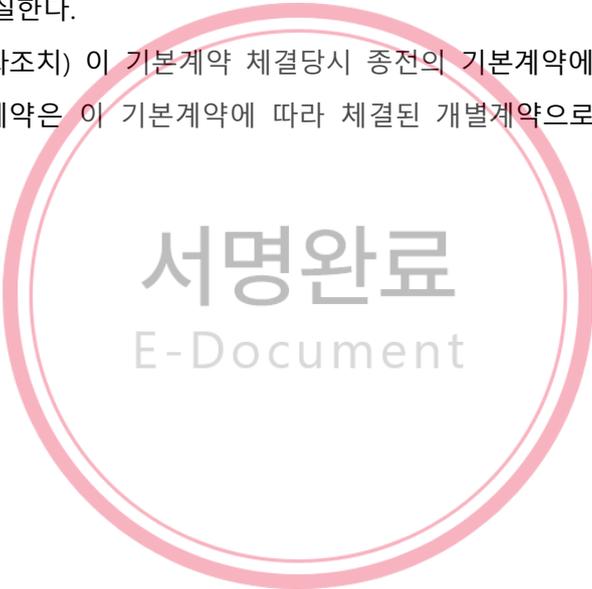
있다.

제47조(계약의 효력)

- ① 이 기본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진다. 다만,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 기간 만료 1월전까지 계약의 변경 또는 해약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기본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보며 그 이후도 동일하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 기본계약의 효력이 소멸된 이후에도 개별계약의 효력이 존속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기본계약의 효력은 당해 개별계약의 존속기간까지로 한다.

부 칙

- ① (기본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기본계약 체결당시 종전의 기본계약은 이 기본계약 체결로 인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 ② (개별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기본계약 체결당시 종전의 기본계약에 따라 체결된 모든 외주 거래에 관한 개별계약은 이 기본계약에 따라 체결된 개별계약으로 본다.



서명완료
E-Document

2. 협력회사 보안 준수 약정서

당사는 SK 주식회사(이하 "귀사"라 함)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 및 "협력회사 보안요구사항"을 보장하고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비밀정보 유지의무

당사는 귀사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계되거나 이에 부수되는 각종 영업상의 비밀 및 경영, 재무/회계, 조직/인사, 개인정보(임직원 및 협력직원, 고객 등), 소프트웨어, 공정, 설계, 산출물 등을 포함한 제반 영업상·경영상·기술상 정보와 자료(이하 총칭하여 "비밀정보"라 함)를 귀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 외 용도로 보관, 복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제공, 공개,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당사 직원의 개인 컴퓨터, E-mail, 휴대전화, 태블릿 등 업무용도로 허가되지 않은 어떠한 수단으로도 비밀정보를 보관, 복제, 사용하거나, 반출하지 않겠습니다.

2. 시설 및 사무기기의 업무목적 내 사용

당사는 귀사로부터 업무수행을 위하여 명시적으로 접근을 허가 받은 시설과 정보 및 S/W, 온라인 사이트, E-mail 계정만을 이용하겠습니다. 귀사가 업무를 위하여 제공한 인터넷, E-mail, 팩스, 전화 등은 업무목적만을 위한 범위 내에서만 이용하겠으며, 비밀정보 보호를 위하여 귀사가 일정한 제한이나 통제를 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하며, 귀사의 통제 환경을 임의로 우회·조작·변경하지 않겠습니다.

3. 업무파일 및 통신내용 점검 동의

당사는 귀사 또는 당사의 전산장비를 사용하여 귀사의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생성·저장하는 파일(비밀번호 등으로 보호되는 파일 포함) 또는 귀사 네트워크를 통해 송신하는 E-Mail, 메신저, 인터넷 게시물 등 모든 통신 내용을 귀사가 정보보호 목적으로 수집하여 분석하고 위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해당 정보를 이용 및 보유하는 데 동의합니다.

1. 비밀정보 반출매체 사용 사전 동의

당사는 업무 수행 기간 중 비밀정보 유출 경로가 될 수 있는 이동저장매체, 개인 컴퓨터(PC/노트북), 태블릿, 모바일기기, 팩스, 스캐너, 복사기, 카메라 등의 반출입 및 사용 시, 혹은 메신저, 웹하드, E-mail, 온라인 사이트, SMS의 사용 시 귀사의 사전 동의 및 허가를 받겠습니다.

2. 당사 인력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제3자 제공 동의 취득 확인

당사는 당사 인력들의 개인정보를 귀사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는 귀사의 동의 취득 여부 확인 요청에 즉시 응할 것이며,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미 취득으로 인한 분쟁 발생 시 당사의 책임하에 귀사를 면책시키고, 발생한 일체의 손해를 배상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3. 개인정보의 외부 제공·유출 금지

당사는 귀사의 사전 동의 및 허가 없이는 어떠한 개인정보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업무 외의 개인 컴퓨터, 메일계정으로 전송하지 않겠습니다. 단, 업무 수행을 위해 귀사의 사전 동의와 허가를 득한 경우 각 개인정보 주체로부터 유효적법한 동의를 수취한 후 기타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귀사가 동의한 제휴업체 또는 수탁업체로 전송하고, 해당업체에서 업무 종료와 동시에 삭제 및 안전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이후 발생하는 보안사고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4. 비밀정보 및 자산의 반납 및 폐기

당사는 업무가 종결되거나 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파일, Hardcopy 등 매체·형태·방법을 불문하고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일체의 비밀정보 및 이와 관련된 제반 자료와 정보, 그 등/사본 일체 및 귀사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산을 귀사에 즉시 반납하겠으며, 귀사가 요청하는 경우 귀사의 참관 하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반드시 폐기하겠습니다.

5. 업무 산출물에 대한 귀사의 권리

당사는 업무수행의 결과 산출된 모든 결과물(보고서, 결과물, 도면, 컴퓨터 프로그램, 방법론 등)에 대한 제반 권리가 귀사에 귀속됨을 인정하고, 귀사가 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데 협조하겠습니다.

6. 제3자 권리 침해금지

당사는 귀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불법 S/W 등 허용되지 않은 S/W의 설치·사용, 혹은 타사의 영업비밀·지식재산권 침해 등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일절 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당사는 귀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의 OSS(Open Source Software)를 이용할 경우 관련

라이선스 의무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당사가 이를 위반하여 민사·형사·행정상 분쟁/이슈가 발생할 경우 당사는 귀사를 면책시키고 관련된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또한 위 내용을 당사 투입 인력에 주지시킬 것이며, 해당 인력의 고의 또는 과실을 당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7. 손해배상 등

본 약정을 위반할 경우 당사는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부담하고 그러한 위반 행위로 인하여 귀사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겠으며, 귀사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였음에도 당사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 등 귀사의 조치를 감수하겠습니다.

8. 기타

본 약정 외 사항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 정보보호 또는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 및 관련 지침을 준수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약정함이 상위 없음을 확인하고 이 약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서명완료

E-Document

SK 주식회사 귀중

3. 협력회사 보안요구사항

SK 주식회사(이하 "SK"라 함)의 협력회사는 사업 수행 중 SK의 정보자산에 대한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래의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적극 실천한다.

1. 대상: 협력회사라 함은 SK와 거래관계를 갖는 모든 회사를 포괄하며, 본 보안요구사항은 모든 협력회사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2. 보안관리 요구사항

□ 정보자산의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보장

- SK의 정보자산을 허가 없이 경쟁사, 외부 또는 제3자에 공개 및 유출하지 말아야 하며, 특히 업무 수행 시 취득한 정보를 소속회사나 다른 협력회사 등에 은연 중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SK의 정보자산을 무단으로 변경하지 말아야 하며, 정확하고 완전한 상태로 유지한다.
- SK의 정보자산에 대한 접근을 필요로 하는 자가 적정 시간에 이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한다.

□ 정보자산의 유출 방지

- SK의 경영계획정보, 조직 및 인사정보, 재무회계정보, 프로젝트산출물 등의 주요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허가되지 않은 채 On-Line 이나 Off-Line 경로를 통해 유출하는 것을 금지한다.
- SK의 주요 정보자산을 메신저, 웹 스토리지 서비스, P2P, FTP, 각종 게시판 및 블로그 등의 On-Line 을 통하여 허가되지 않은 채, 외부로 유출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한다.
- 사업을 수행하는 도중 허가 없이 PC/노트북의 반출입을 금지하여 주요 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고, 필요시 별도 장비를 지원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한다.
- 개인 컴퓨터, 태블릿을 비롯한 모바일 기기, 이동저장매체, 외장 HDD, 하드카피 문서 등의 사용은 승인을 득한 후에만 가능하며, 이를 통한 정보자산의 유출을 금지한다. 이의 사용을 위한 허가/등록/반출입 등의 절차는 별도의 관리규정을 따른다.

□ 보안 관련 법적 조항 및 보안규정 및 지침 준수 책임

-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의 법적인 요구사항을 준수한다.

- 정보보호 관련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SK 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에 대한 해킹 및 침해행위를 금한다.
- SK 보안관련 규정 지침에 대한 설명 교육을 성실히 수강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여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수한다.
- SK 지적 재산에 대한 보호의무를 성실히 준수한다.

□ 계약 완료 시 정보자산 반환 및 폐기 의무

- 사업 수행을 위해 이용한 모든 SK의 정보자산은 해당 사업 종료 시 반드시 SK에 귀속되어야 한다.
- 계약 완료 시 정보자산의 반환 및 폐기는 해당 사업의 SK 책임자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

□ 바이러스 확산 방지

- SK 사내로 반입되는 모든 장비에는 반드시 SK 표준 백신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관련 SK 임직원의 협조를 얻어 SK 헬프데스크의 바이러스 검역 과정을 거친 후 SK 사내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있다.
- 수시로 반 출입되는 장비에 대한 관리 책임은 협력회사 측에 있으며, 백신의 정상 작동 여부와 바이러스 엔진의 업데이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 SK 사내 망에 연결된 상태로 E-mail을 이용하거나 인터넷을 통한 자료를 다운로드 받는 경우 반드시 바이러스 점검을 수행한다.

□ 보안위반사항 발생 시 책임

- 보안요구사항 및 계약서 상에 명시된 준수사항 불이행으로 인해 SK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 책임은 협력회사 측에 있으며, 현재 사업 및 향후 계약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 보안사고 보고 및 조사 동의

- 협력회사 직원은 SK 내에서 사업 수행 중 보안사고 발견 시 신속히 해당 사항을 SK 임직원에 보고하여 지속적인 업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

□ 보안감사 수용

- 협력회사의 SK 보안정책 준수 현황 감독을 위해 SK는 정기적으로 보안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협력회사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 협력회사 직원들은 자체적인 보안점검을 실시하여 SK의 보안정책에 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SK의 핵심 전산시스템 또는 기밀 정보를 다루는 업무를 수행하는 협력회사 직원에 대해서 E-mail 모니터링 등의 물리적, 논리적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 기타 사항

- SK 출입 시 반드시 출입증 혹은 방문증을 패용하여야 하며, 허가된 지역만 출입한다.
- 사업 수행을 위해 SK 내부 시스템에 대한 사용 권한을 부여 받은 경우 협력회사 직원은 부여 받은 계정 및 패스워드가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한다.

3. 개인정보 취급에 따른 보안 요구사항

□ 수탁하는 업무의 목적 및 범위

- 개인정보 수탁 업무 내용 및 목적: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서비스 제공
- 개인정보 제공 범위 및 제공 항목: 프로젝트 수행 중 업무상 필요에 의해 제공 받는 고객의 개인정보
- 개인정보 제공 방법: Soft 및 Hard Copy 로 온/오프라인으로 제공
- 개인정보 보유 기간: 위탁업무 종료 시까지
- 개인정보 파기 방법: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고,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하는 등 복구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파기

□ 개인정보 처리 시 관리사항

- SK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개인정보(임직원, 협력직원, 고객 등)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SK 개인정보보호지침 등 관련 사규를 준수함
- 개인정보를 업무 이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기타 개인정보 보호를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 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의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는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접근권한 관리
- 비밀번호 관리
-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 및 운영
-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 물리적 접근통제

□ 재수탁 제한에 관한 사항

- SK로부터 수탁 받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이하 "재수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그러나, 업무수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재수탁이 발생하는 경우, SK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개인정보 관리현황 점검 및 교육

- 협력업체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협력업체 직원에 대하여 교육 및 점검을 아래와 같은 횟수로 정기 수행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협력업체는 SK의 교육 및 점검 결과기록 요구 시 제공할 수 있다.

- 개인정보보호 교육: 분기 1회 이상, 개인정보 보안점검: 반기 1회 이상

- SK는 협력업체가 본 약정서에 명시하여 제공한 개인정보를 업무 목적범위 내에서 이용하고, 안전하게 취급하는지 등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자료 제출 요구에 관한 사항 Document

- SK는 협력업체에 개인정보보호 활동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력업체는 지체 없이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 유출사고 대응

협력회사는 개인정보(임직원, 협력직원, 고객 등)의 유·노출 사고 및 징후를 인지하는 경우 SK의 협업부서 임직원 또는 정보보안팀으로 즉각 보고한다.

4. 비즈니스 파트너 윤리실천 서약

당사는 SK주식회사가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한 행복한 사회 만들기에 동참하기 위해 귀사와의 거래 관계에 있어 윤리성과 신뢰도의 확보,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 및 공감하며, 이에 비윤리 행위 방지를 위한 의무이행 및 책임 등에 대하여 아래의 사항에 동의하고 이를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거래를 진행함에 있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중요시 생각하며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당사는 어떠한 사유로도 아동노동을 금지하고 언어 학대, 폭력, 성희롱, 인종차별 등 근로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행위를 근절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3. 당사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환경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사업 방식을 개발, 이행 및 유지하겠습니다.
4. 당사는 (i)귀사와 진행했던 과거의 거래 관계에 있어 관련 법령 및 상관례를 위반하거나 특히 다음과 같은 비윤리 행위(이하 "비윤리 행위")가 없었음을 진술 및 보장하고(비윤리행위로 인해 제재를 받고 제재 기간이 종료된 건은 제외), (ii)향후 거래(현재 귀사와 진행 중인 거래 및 장래 귀사와 체결하는 계약에 따라 이뤄지는 모든 거래를 포함함)를 진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상관례 위반이나 비윤리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당사는 (iii)타사 및 제3자와의 거래 행위에 있어서도 기업 윤리와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비윤리 행위를 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가. 귀사 소속 임직원 및 귀사 소속 기업집단(에스케이) 내 계열회사 소속 임직원에 대한 금품, 향응, 접대 및 기타 금전적/비금전적 이익 제공 행위.

이익 제공과 관련한 비윤리 행위의 구체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되, 그에 한정되지 않음

- ①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향응 및 접대 행위
- ② 합리적인 근거 없이 화폐, 유가증권, 기타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 ③ 부채의 탕감 또는 제3자에 대한 부채의 상환 행위, 비전형적인 동산/부동산 거래
* 정당한 근거 없이 통상적인 시가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금액으로 거래가격을 결정하는 거래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비전형적인 동산 및 부동산 거래
- ④ 금전소비대차 및 물적, 인적 담보제공 거래
- ⑤ 기타 체결 형태를 불문하고 장래에 대한 보장(퇴직 후 고용 및 취업 알선, 거래 계약 체결 등)에 대한 약속 등

나. 당사의 동종, 경쟁업체와의 입찰 담합 등 불공정행위

다.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고의로 중요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하는 행위

라. 기타 귀사 또는 귀사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형사적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

5. 비윤리 행위 발생(귀사와의 과거 거래와 관련된 비윤리 행위의 사후적 적발을 포함)시, 귀사가 당사의 비윤리 행위 발생 사실 및 당해 비윤리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정보(이하 "비윤리 행위 관련 정보")를 귀사 및 귀사 소속 기업집단(에스케이) 내 모든 계열회사(이하 "비윤리 행위 관련정보 공유 계열사")에게 통지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당사는 이러한 통지 및 그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비윤리 행위 관련 정보의 공유가 귀사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당사의 영업비밀에 대한 침해에도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6. 당사는 귀사 및 비윤리 행위 관련 정보 공유 계열사가 비윤리 행위(타사 및 제3자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공개적으로 알려진 당사의 비윤리 행위도 포함)를 근거로, 당사와의 거래(장래 발생하는 입찰에 대한 참가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음)에 대한 제재조치 (계약 갱신 거절, 신규 거래 제한을 의미하되 비윤리 행위가 발생한 거래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귀사의 경우에는 반드시 그에 한정되지 않고 해당 비윤리 행위에 상응하는 합당한 제재조치를 의미함)를 할 수 있음에 동의하고 이와 관련하여 귀사 및 비윤리 행위 관련 정보 공유 계열사를 상대로 민사상, 형사상의 책임을 추궁하는 등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7. 당사는 귀사의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위 내용에 위배되는 행위를 제의받았을 경우 이를 거부할 것이며, 그 내용을 즉시 귀사의 윤리경영팀(<http://ethics.sk.co.kr>, Tel. 02-6400-6262)에 알리고 비윤리 행위 관련 조사협조요청에 성실히 응하겠습니다.

SK 주식회사 C&C 귀중

참고사항: SK그룹은 윤리경영 제보/상담 Site(<http://ethics.sk.co.kr>)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Site를 통한 제보/상담은 제보는 별도의 로그인/인증없이 익명으로도 가능하며, 해당 Site는 개별 회사가 아닌 그룹 차원에서 관리되어 제보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제보에 대한 사실 확인과정에서 제보자의 신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는 일이 없도록 내부규정에 따라 엄격히 보호되며 진술, 자료 제공 등 조사에 협조한 구성원도 제보자와 동등하게 보호됩니다

또한 SK주식회사 C&C는 "자진신고 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력회사나 협력회사 직원 등이 부정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도 이를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부정행위의 종류, 가담정도, 자진신고 시기 및 신고내용의 정확성 등을 고려하여 그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를 감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SK주식회사 C&C 윤리경영팀 제보/상담 전화 02-6400-6262

5. 비밀유지계약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비밀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각자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정보의 정의) ① 이 계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스스로 알게 되거나, 상대방 또는 그 직원(이하 '상대방'이라 함)으로부터 제공받아 알게 되는 상대방에 관한 일체의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 및 이를 기초로 새롭게 발생한 일체의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② 제1항의 비밀정보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사양, 데이터, 공식, 제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단가, 아이디어 등 모든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와 그러한 정보가 수록된 물건 또는 장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비밀의 표시) ①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서면에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대외비' 등의 국문 또는 영문 표시)를 표시해야 한다.

②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구두,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즉시 상대방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비밀정보를 제공한 당사자는 비밀정보 제공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의 사용용도 및 정보취급자 제한)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이 계약에서 정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각 당사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상대방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제3자와 사이에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각 당사자는 직접적, 간접적으로 하도급계약을 이행하는 임직원들에 한하여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임직원 각자에게 상대방의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상대방은 반대 당사자에게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비밀유지 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서명완료
E-Document

제5조(비밀유지의무)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이 계약의 체결사실이나 내용, 이 계약의 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이 입증되는 정보는 비밀정보가 아니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 상대방의 비밀정보 제공 이전에 다른 당사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정보
2.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알게 된 정보
5.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정보
6.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판결, 명령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공개의무에 따라 공개한 정보

② 각 당사자가 제1항 제6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자료의 반환)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대방의 비밀 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복사본, 복사물, 모방물건, 모방장비 등을 포함)을 즉시 상대방에게 반환하거나,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료의 반환 또는 폐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하기로 한다. 다만, 자료의 반환 또는 폐기 의무자가 우선 그 비용을 지출한 이후 상대방에게 그 부담부분을 정산하여 청구한다.

제7조(권리의 부존재 등) ① 이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이를 제공한 당사자에 속한다.

② 이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비밀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③ 이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계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이 계약의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계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

④ 비밀정보의 제공자는 상대방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할 적법한 자격이 있음을 보증한다.

⑤ 각 당사자는 이 계약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기간) ① 이 계약은 전문에서 정한 기간동안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 제5조 및 제7조의 의무는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이 계약이 해제·해지 등의 사유로 종료된 이후부터 계속하여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손해배상) 이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당사자가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10조(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의 변경)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이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이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1조(일부무효의 특칙) 이 계약의 내용 중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도 이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유효인 부분만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부를 무효로 한다.

제12조(분쟁의 해결) 비밀유지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의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6. 협력회사 부정당행위 제재 확인서

당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위반한 경우 향후 SK주식회사와의 거래가 중단, 제한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1. 거래에 필요한 허가장(면허장) 또는 자격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2. 계약이행에 있어 부실, 조잡, 부정 설계 및 시공을 한 경우
3.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하도급의 제한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을 받은 경우
5. 계약이행에 있어 안전, 보건 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가한 경우
6. 정당한 이유 없이 납기 등 계약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경쟁 입찰의 경우 특정 수급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거나 고의로 무효 입찰을 하는 등SK㈜의 구매관리업무 수행을 방해한 경우
8. 계약서류를 위조, 변조, 부정하게 행사한 경우
9.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SK㈜, SK㈜의 직원 기타 관계자에게 부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등 SK㈜의 '협력회사 윤리 강령'을 위배하는 행위를 한 경우
10.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 이행을 방해한 경우
11. 감독,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경우
12. 사업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한 경우

확인인 :

(인)

7. SHE 이행 서약서

당사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SHE (Safety, Health and Environment) 관리에 대하여 한 귀사(SK)의 요구조건 및 관련 법규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며, 공사수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작업 투입 전 SHE 계획서를 수립, 귀사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며, 6개월 주기로 갱신한다.
2. 당사 소속(계약업체 포함) 근로자의 재해발생 시 경중을 막론하고 6하 원칙에 준하여 즉시 귀사에 보고한다.
3. SHE 관련 의무사항 미 준수, 재해발생에 대한 은폐 및 지연보고 등의 사항 발생 시 귀사의 규정에 따라 입찰제한, 등록배제 등의 조치를 받아도 이에 따른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한다.
4. 현장 작업인원에게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SHE 교육을 실시한다.
5.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6. 신규 작업인원 채용 시 근로계약서, 개인보호구 지급대장, 교육수료확인서를 해당 인원의 작업 투입 후 3일내 귀사에 제출한다.
7. 장비 및 기계류는 정비 후 관련 규정에 따라 방호장치가 부착된 것에 한하여 귀사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고 반입한 후에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며 작업종료 후 즉시 반출한다.
8. 공정의 진행에 따라 적절한 안전시설물을 설치 및 유지 관리하여 사고예방에 노력한다.
9. 안전관리비는 기성청구 시 안전관리비의 사용내역과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귀사 안전관리자의 승인을 받고, 공사종료 시 실비정산하며 미 사용 분은 감액 정산한다.
10. 현장 작업인원은 안전조회, 정리정돈 등 무재해 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당사가 주관하는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이에 대한 기록을 유지 관리한다.
11. 당사의 귀책에 따라 현장에서 발생하는 제반사고 또는 재해발생시 관련 규정에 의한 산재처리 및 비용

처리 등에 대한 제반 책임은 당사가 부담한다.

12. SHE 이행과 관련하여 귀사 SHE 관리자 포함 관련 직원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며, 이에 불응 시 그에 따른 책임은 당사가 진다.

13. 당사는 업무수행 시 발생하는 환경 위해 요소의 발생 방지 또는 저감에 적극 노력한다.

14. 비산먼지 저감, 수질오염관리, 폐기물 분리수거 및 발생저감, 소음·진동 저감을 위한 사전예방활동을 통하여 귀사의 환경규정 및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이와 관련하여 관계기관의 제재조치 또는 환경민원 등 불이익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며, 당사의 귀책으로 귀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 등이 발생시 당사가 책임지기로 한다.

15. 당사의 작업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은 당사의 책임 하에 현장의 처리지침(위탁업체 지정 등)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6. 귀사의 환경측정 및 감시요구가 있을 경우 당사는 이에 따르기로 한다.

17. SHE에 대한 귀사의 시정조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시정조치하며, 그 결과를 귀사에 즉시 통보한다.

18. SHE와 관련해 관계 법령(산업안전보건법 등) 및/또는 귀사의 요구조건을 위반하는 등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당사(재하도급업체, 협력업체 등 포함) 소속 근로자 또는 제3자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귀사의 규정에 따라 귀사가 취하는 영구(즉시) 퇴출, 거래금액쿼터제 등의 제재조치에 따르기로 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또한 귀사가 SK 그룹사 내에 SHE와 관련된 당사의 제재 현황을 공유할 수 있음에 동의하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20 년 월 일

(서약인) 소재지

회사명

대표자

(인)

8. 업무재위탁 약정서

원사업자와 수탁사업자는 발주자의 업무를 재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업무재위탁 약정서 (이하 "본 약정서"라 함)를 체결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정서는 원사업자가 발주자의 업무를 수탁사업자에게 재위탁하고, 수탁사업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사업자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정서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7호)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자치부 고시 제2016-2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재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사업자는 원 계약의 도급업무내역서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 (재위탁 제한) 수탁사업자는 발주자와 원사업자의 사전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원 계약 및 본 약정서(이하 총칭하여 "계약"이라 함)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제5조 (비밀유지) ① 원사업자와 수탁사업자는 계약 체결로 지득한 업무상 및 기술상의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원사업자와 수탁사업자는 계약기간 중, 계약의 종료 또는 해제/해지 이후에도 제1항의 의무를 부담하고, 제1항의 의무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원사업자와 수탁사업자는 계약의 종료 또는 해제/해지 시 제1항에 따른 정보를 반환하거나 파기하여야 한다.

제6조 (손해배상) 수탁사업자가 계약 이행에 있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어 발주자, 발주자의 고객 또는 원사업자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사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7조 (성과물에 대한 권리) ① 수탁사업자가 제출하는 완성된 산출물(프로그램 포함)의 소유권, 지식재산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 등 모든 권리는 원사업자에게 귀속되고, 수탁사업자는 실시·이용·사용권을 가진다. 단, 계약 전부터 수탁사업자나 제3자의 지식재산권이 성립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수탁사업자가 계약 이행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 등 기타 권리를 사용할 경우, 수탁사업자는 그

사용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고, 원사업자 및 발주자를 면책시켜야 한다.

③ 본 조의 권리와 관련하여, 원 계약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제8조 (관련 법령 준수) 수탁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보호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이의 및 분쟁의 해결) 원사업자와 수탁사업자는 계약에 관하여 상호 이견이 있을 경우 서면 자료에 따르고, 서면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상관습에 따른다.

제2장 개인정보처리 재위탁

제10조 (본 장의 적용) 본 장의 조항은 원사업자가 발주자의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사업자에게 재위탁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제11조 (개인정보처리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사업자는 원 계약의 도급업무내역서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행한다.

제12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사업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7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사업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재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사업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재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7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자 및 원사업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사업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발주자 및 원사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재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원사업자는 수탁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 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원사업자는 수탁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 ③ 원사업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사업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방법 등에 대해서는 원사업자는 수탁사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5조 (손해배상의 특칙) 제6조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원사업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원사업자는 이를 수탁사업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제3장 금융업무 재위탁

제16조 (본 장의 적용) 본 장의 조항은 원사업자가 발주자의 금융업무를 수탁사업자에게 재위탁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제17조 (이해상충방지) 수탁사업자는 계약 이행에 있어 발주자의 고객의 이익을 해할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8조 (비상계획 및 재해복구계획) ① 수탁사업자는 비상사태로 인한 영업중단에 대비하기 위하여 계약 이행 중 업무 수행 내역에 대한 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② 수탁사업자는 발주자와 원사업자가 수립한 백업계획 및 재해복구계획을 숙지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해당 시스템 구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9조 (관리·감독 및 검사 수용) ① 수탁사업자는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발주자의 감독·검사 및 자료 요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단, 기술자료 등 관계 법령에서 보호하는 자료는 제외한다.
- ② 원사업자와 수탁사업자는 계약서 사본의 감독기관 제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③ 원사업자와 수탁사업자는 금융감독기관의 자료 요구 및 감독·검사 요구에 대하여 상호 협조하여 성실히 대응하여야 한다.

9. 협력회사 ESG 행동규범

SK(주)는 협력회사의 사업장 근로환경에 대해 높은 수준의 운영기준을 기대합니다. 따라서, SK(주)는 협력회사와 SK(주)간 동반성장의 근간이 되는 준법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회사 행동 규범(이하 "규범"이라함)을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SK(주)의 협력회사는 모든 적용 가능한 법률 및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확보하며 근로자들이 존중받을 수 있는 경영환경을 구축하고, 윤리적으로 기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본 규범은 SK(주)가 협력회사들에게 요구하는 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규범의 적용은SK(주)의 서비스/제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재료 및 서비스를 설계, 판매, 제조 또는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을 포함합니다. 모든 협력회사는 규범을 준수해야 하며, 해당 협력회사에 재료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하위 공급망에도 이를 준수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SK(주) 또는SK(주)가 지정한 외부기관은 협력회사가 본 규범을 준수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협력회사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본 규범에 대한 협력회사의 중대 위반사항이 요청기한 내 개선되지 않을 경우 SK(주)와의 거래가 중단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SK(주) 협력회사 관리정책 및 기준 변경 등에 따라 규범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본 규범과 현지 법규의 내용이 상충될 시에는 보다 엄격한 기준이 우선 적용됩니다.

1. 인권 및 노동

협력회사는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수준으로 근로자 인권을 보호하고 이들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는 임시근로자, 이주근로자, 실습생, 파견 근로자 등 모든 형태의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근로자는 현지 법규에 따라 합법적인 근로와 권리 보호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1-1. 강제 근로금지

모든 근로는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강제근로자, 인신구속 계약(채무변제를 위한 숙박 포함)에 따른 근로자, 비자발적 죄수근로자, 인신매매근로자를 고용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는 노동력 착취를 목적으로 협박, 강요, 강제, 납치, 사기 등으로 사회적 약자를 이동, 채용, 전근시키는 등의 모든 행위가 포함됩니다.

근로자에게 고용조건으로, 정부가 발행한 신분증, 여권 또는 근로허가증의 양도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협력회사 또는 인력 파견회사는 근로자에게 수수료(예: 취업알선 등) 또는 보증금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반드시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근로조건을 문서화하고 전달해야 합니다.

1-2. 미성년 근로자보호

아동 근로자 고용은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아동"은 15세, 의무교육이 끝나는 연령, 현지 법령에 따른 법정 고용 최저연령 중 가장 높은 연령 미만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아동 근로자가 발견된 경우, 협력회사는 즉각적인 대응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즉시 아동 근로자 고용을 중지하고 고용과정에서 근로자들의 연령 검증프로세스를 개선해야 합니다. 실습생 프로그램 등을 운용할 경우 현지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법정 고용 최저연령보다 높은 청소년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으나, 18세 미만의 근로자들은 안전보건 측면에서 위험한 업무(산업, 야간근무 포함)를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

1-3. 근로시간 준수

주당 근로시간은 법으로 규정한 최대 근무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나아가, 비상 사태 또는 특수상황을 제외하고 주당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제시하는 근로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1-4. 임금 및 복리후생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 초과근로수당, 법으로 정해진 복리후생 항목 등을 포함해야 하며 현지법률 및 규정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모든 초과근로는 근로자의 동의 하에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현지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정규 근로시간에 적용되는 시간당 급여보다 높은 초과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징계조치의 수단으로 임금 삭감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임금 지급 기준 및 항목은 급여 명세서 또는 급여지급 내역이 기록된 서면, 사내 인트라넷 등을 통해 근로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1-5. 인도적 대우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 성적학대, 체벌, 정신적 또는 신체적 강압, 욕설을 포함한 거칠고 비인도적인 대우가 있어서는 안되며, 또한 그러한 대우를 하겠다는 위협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협력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인도적 대우를 보장하는 방침과 절차를 규정하고 근로자에게 이를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1-6. 차별금지

협력회사는 근로자가 괴롭힘이나 불법적인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채용 과정과 임금, 승진, 보상, 교육기회 등의 고용관행에 있어 인종, 피부색, 나이, 성별, 성적성향, 민족성, 장애, 임신, 종교, 정치 성향, 조합원신분, 결혼 여부 등에 근거해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현지 법률 또는 작업장안전을 위해 요구되는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 또는 채용후보자에게 차별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 의료검사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1-7. 결사의 자유

협력회사는 현지 국가의 법규에 따라, 근로자가 사원협의회 또는 노동조합을 조직, 가입 하고, 단체협약과 평화적 집회를 위해 다른 근로자와 자유롭게 결사할 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근로자가 이와 같은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권리도 존중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가 차별대우, 보복조치, 위협행위, 괴롭힘 등에 대한 걱정 없이 근로조건과 경영방침에 대한 의견 및 애로사항을 협력회사와 자유롭게 소통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2. 안전보건

협력회사는 회사 업무상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에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보장하는 활동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현지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장을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2-1. 산업안전

근로자가 잠재적 안전 위험요인(예: 감전, 화재, 차량, 추락위험 등)에 노출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해 적절한 행정적 통제, 예방적 차원의 유지관리와 동시에 지속적인 안전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상기 명시된 수단으로 위험요인을 충분히 통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적절한 개인 보호 장비를 제공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안전 문제 관련 우려사항을 경영진에게 자유롭게 제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2-2. 비상사태대비

잠재적으로 발생 가능한 비상사태와 사고를 사전에 파악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비상사태 발생 시 보고, 근로자 공지 및 대피절차 등을 마련하고, 비상사태예방을 위한 근로자 대상 비상대피 훈련, 탈출시설, 화재감지 및 소화장비확보 등을 통하여 비상사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2-3. 신체 부담업무

근로자가 오랜 시간 반복적으로 수작업을 해야 하거나, 무거운 것을 들거나 서있는 작업, 그리고 체력소모가 많은 조립업무를 포함하여 근로자가 육체적으로 힘든 작업에 노출 되는 것을 파악하고, 평가하며, 통제해야 합니다.

2-4. 안전보건교육

협력회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교육은 근로자가 주로 사용하는 언어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업장 내 안전보건 관련 정보는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3. 친환경경영

협력회사는 기업운영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SK(주)에 제품, 서비스 등을 제공할 시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폐기, 재활용, 산업용수 관리와 재 사용, 온실가스 및 대기배출 물질 관리 등 환경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3-1. 폐수 및 폐기물

협력회사는 고형폐기물(非 유해성)을 체계적으로 파악, 관리, 저장 및 폐기/ 재활용해야 합니다. 기업의 다양한 활동, 생산공정, 위생시설에서 발생된 폐수와 고형폐기물은 그 특성을 파악하여, 모니터링하고, 규제에 따라 관리/ 처리한 뒤 배출/ 폐기되어야 합니다. 또한 폐수발생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폐수처리공정의 처리효율을 상시 모니터링 해야 합니다.

3-2. 에너지소비와 온실가스 배출

협력회사는 단계적으로 전사 및 사업장 단위로 에너지 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파악 해야 합니다. 또한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배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비용대비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SK(주)는 이와 관련된 자료(온실가스 배출량/감축계획 등 제조사의 자료 포함)를 요구할 수 있으며, 협력회사는 이에 대해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4. 윤리경영

사업장 운영에 있어 협력회사의 경영활동은 모든 현지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SK(주)는 협력회사가 가장 높은 수준의 윤리기준을 유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4-1. 청렴성

협력회사는 모든 기업과의 거래 관계에 있어서 최고 수준의 청렴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관련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기타 형태의 이득제공을 비롯하여 어떠한 형태의 부패나 갈취, 횡령, 뇌물 수수, 상납, 선물 제공 등 위법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밖에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 하거나 수령해서도 안되며, 이에 대한 감시 및 단속 절차를 이행하여 반 부패 법률 자율 준수를 실천해야 합니다.

4-2. 정보공개

협력회사의 노무/ 안전보건/ 환경관리실태, 경영활동, 지배구조, 재무상태, 성과에 대한 정보는 해당 법규 및 일반적인 산업계 관행에 따라 공개되어야 합니다. 공급망 내 관련 분야 실태 및 관행에 대한 기록위조나 부실 표기는 용인될 수 없습니다.

4-3. 지적재산보호

지적재산권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기술 및 노하우의 이전은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방식 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SK(주)의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4-4. 개인정보보호

협력회사는 사업과 관련된 협력회사, 고객사, 소비자 및 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합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수집, 보관, 처리, 전송 및 공유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4-5. 데이터 보안

협력회사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스스로 알게 되거나, 제공받는 데이터에 대해 비밀유지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데이터 침해 사례 발견시 당사에 신고/통지해야 하며, 침해 사실 확인 과정에서 수행되는 데이터 처리 시스템 접근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4-6. 내부고발자 보호

협력회사는 행동규범의 위반 또는 내부고발에 대한 보복행위(괴롭힘, 차별, 부당행위 등)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SK(주)는 내부고발 사실을 비밀로 유지하며, 내부고발에 대한 보복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또한 제기된 문제사항에 대해 공정하게 규명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4-7. 관리체계 구축

협력회사는 각 사의 규모, 사업특성에 상응하는 정책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관리체계는 관련 법/규제 준수, SK(주) 협력회사 행동규범 준수, 행동규범 준수관련 운영 리스크 규명 및 개선을 지원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SK(주)는 협력회사의 준수 현황 확인을 위해 현장 실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협력회사는 이때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조해야 합니다.

당사는 SK(주)가 요구하는 바를 제시하고 있는 협력회사 ESG 행동규범 세부 사항에 동의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SK주식회사 귀중